

## 보도해명자료 (‘13.4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론스타의 로비전...“2조4000억 손해봤다”며 한국에 소송  
(‘13.4.10, 국민일보)

### 1. 기사내용

- 론스타는 한·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할 전망
- 한·미 FTA의 ISD 관련 조항은 한-벨기에 투자협정(BIT) 보다 론스타에 유리
  - BIT 기반 소송은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, 한·미 FTA의 경우 국내법 배제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론스타는 현재 한-벨기에 투자협정을 통하여 우리 정부를 제소한 바, 동 중재에서 한·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님
- 또한, 동 보도내용중 ‘한·미 FTA ISD 조항이 론스타에 유리하다’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
  - 한·미 FTA는 일반 BIT에 비하여 소급효 배제, 페이퍼컴퍼니 배제, 조세조치 예외 등 여러 안전장치와 국내규제 권한 확보 근거를 두고 있음

- 한-벨기에 투자협정은 국내법을 참고하고, 한·미 FTA의 경우 배제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정 해석이 아님
- 한-벨기에 투자협정에는 별도의 준거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
- 동 투자협정상 ISD를 관할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(ICSID)는 ‘당사자가 합의하는 법원칙’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‘분쟁 당사국인 계약국의 법률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’을 적용토록 규정

※ 관련 문의: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, 고장원 사무관(02-2110-4480)